

#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이 은 림 위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세부사

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가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 이용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민이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수경시설의 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